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5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9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학교 개방 민원에 따른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연간 계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에 관한 민원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답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.
-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허가 시 지정된 대표자의 책임 등에 관한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두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5항과 안 제3조의2 제3항을 삭제함.
-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,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함(안 제12호제4항).
- 사용신청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1명의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하고, 그 대표자가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·책임 등을 다하도록 역할을 규정함(안 제12조제5항 신설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5항과 안 제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.

안 제3조의2 제2항의 “단서” 를 “각호” 로 한다.

안 제12조제4항 중 “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며, 사용허가 신청 시 책임자 1명을 별도로 지정하여 학교시설 사용 시 전원차단, 문단속, 청소 등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·책임 등을 다하도록 한다” 를 “사용자가 책임을 진다” 로 하고, 안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안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사용신청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하고, 대표자는 학교시설 사용 시 전원차단, 문단속, 청소 등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·책임 등을 다하도록 한다.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3조(개방의 원칙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개방의 원칙) ① ~ ④ (원안과 같음)</p> <p>⑤ <u>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연간 계획(개방 범위, 개방 시간, 선정절차, 이용수칙 등)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개방의 원칙) ① ~ ④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<p>제3조의2(개방의 제한)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의2(개방의 제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1. ~ 5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<u>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홈페이지에 알려야 하고, 그 사유</u></p>	<p>제3조의2(개방의 제한) ①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1. ~ 5.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각호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원 안	조 례 안	수 정 안
<p data-bbox="204 501 352 539"><신 설></p> <p data-bbox="172 1189 571 1285">제12조(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) ① ~ ③ (생 략)</p> <p data-bbox="204 1375 571 1603">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<u>사고</u>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</p>	<p data-bbox="635 311 999 477"><u>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635 501 999 1162">③ 제1항 제5호의 사유를 개방의 제한 사유로 게시하여 이의 신청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<u>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민원을 신청한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600 1189 999 1350">제12조(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) ① ~ ③ (원안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635 1375 999 2036">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<u>화재, 안전사고 등에</u> 대하여는 <u>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며, 사용허가 신청 시 책임자 1명을 별도로 지정하여 학교시설 사용 시 전원차단, 문단속, 청소 등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·책임 등을 다하도록 한다.</u></p>	<p data-bbox="1062 320 1426 472">----- ----- -----.</p> <p data-bbox="1062 501 1203 539"><삭 제></p> <p data-bbox="1027 1189 1426 1350">제12조(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) ① ~ ③ (조례안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1062 1375 1426 1603">④ ----- ----- <u>화재, 안전사고 등에</u> 대하여는 <u>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</u></p>

원 안	조 례 안	수 정 안
<p data-bbox="204 315 352 353"><신 설></p> <p data-bbox="204 813 389 851">⑤ (생 략)</p>	<p data-bbox="632 315 780 353"><신 설></p> <p data-bbox="632 813 903 851">⑤ (원안과 같음)</p>	<p data-bbox="1058 315 1428 790">⑤ 사용신청자는 사용 허가 신청 시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하고, 대표자는 학교시설 사용 시 전원차단, 문단속, 청소 등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·책임 등을 다하도록 한다.</p> <p data-bbox="1058 813 1428 913">⑥ (조례안 제5항과 같음)</p>